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66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윤건영·김영배·이기헌

박홍배 · 허성무 · 전용기

김영진 · 임광현 · 권칠승

이강일 • 박민규 • 맹성규

양부남 • 한병도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과 지역 소방 사무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 유형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일괄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발전 시 발생하 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하했습니다. 또한, 열병합용 LNG 발전은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30%포인트 우수하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세부담금 환급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LNG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적용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안 제146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항제3호 중 "0.6원"을 "0.6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병합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2원

나. 그 밖의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②		
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	3		
시(kWh)당 <u>0.6원</u> <u><단서 신</u>	<u>0.6원</u> . <u>다만, 액화</u>		
<u>설></u>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표준세		
	<u>율로 한다.</u>		
<u><신 설></u>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		
	병합발전: 발전량 킬로와		
	<u>트시(kWh)당 0.2원</u>		
<u><신 설></u>	나. 그 밖의 화력발전: 발전		
	<u>량 킬로와트시(kWh)당 0.</u>		
	<u>3원</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